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안이유

근속승진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시에 근속승진 임용하기 위하여, 경찰공무원의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까지 확대 실시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근속승진임용하도록 함 (안 제26조제4항)
- 나. 임용 시기별로 임용권자는 경감 근속승진 대상인원 및 임용인원을 임용일 20일 전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26조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- 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4항 전단 중 “1회”를 “2회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경우 해당”을 “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근속승진) ① ~ ③ (생략)	제26조(근속승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<u>1회</u> 실시할 수 있다. 이 <u>경우</u>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)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.	④ ----- <u>2회</u> 까지 ----- . -- <u>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⑤ · ⑥ (생략)	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